

문서번호	공원녹지정책과-2814	시 민			
결재일자	2020.2.17.	주무관	공원협력팀장	공원녹지정책과장	푸른도시국장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유정	이윤창	하재호	02/17 최운종
방침번호		협 조			

## 2020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 관리계획



#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교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협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지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<b>바른 우리말</b>을 사용하였습니까?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<b>법적근거</b>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
# 2020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 관리계획

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## 1 관련 근거
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(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)
  - 설치검사, 정기시설검사, 안전점검, 합격표시 등
  -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호)
- 환경보건법 제23조(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)
  -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
- 공원에 모래놀이공간 관리기준 개선(공원녹지정책과-10504, '17.6.20.)
  - 모래검사, 소독관리, 일상관리, 모래관리 안내표시 등

## 2 어린이놀이터 현황

○ 개소수 : 총 1,534개 중 모래놀이공간 553개(36%)

(2019.12.31.기준)

구 분	어린이놀이터(개소)			모래놀이공간 (개소)
	계	도시공원 내	기타공원 (마을마당, 녹지대 등)	
계	1,534	1,387	147	553
자치구	1,482	1,354	128	518
사업소	52	33	19	35

## 3 2019년 관리실적

-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
  - 설 치 검 사 : 검사대상 123개 놀이터 모두 합격
  - 정기시설검사 : 검사대상 744개 놀이터 모두 합격

총 놀이터 (개소)	설치 검사		정기시설검사	
	검사대상	검사율 및 합격율	검사대상	검사율 및 합격율
1,534	123	100%	744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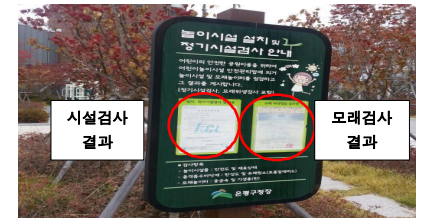
- 모래놀이공간 위생관리
  - 중금속 검사 : 모두 기준치 이하(연 1회)
  - 기생충란 검사 : 모두 미검출(상·하반기 연2회)
  - ※ 상반기 기생충란이 검출된 모래놀이터 12개소는 소독조치 후 재검사하여 미검출

모래놀이공간 (개소)	중금속 검사(연 1회)		기생충란 검사(연 2회)	
	검사율(%)	검사결과	검사율(%)	검사결과
553	100	기준치 이하	100	미검출

- 관리실태 분석
  - ▶ 모래놀이공간 소독횟수 상향 필요
    - 기생충란은 상·하반기 2회의 정기적인 소독에도 불구하고,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('18년 65개소, '19년 12개소)
  - ▶ 모래검사결과 시민안내 미흡 및 개선
    - 모래검사(중금속·기생충란) 결과 홍보시 어린이놀이기구 내 코팅지로 부착하여 탈락 및 훼손 발생, 인지도가 떨어짐
    - ※ 전체 모래놀이공간의 69% 코팅지 부착(378개소/553개소)
    - 기존 놀이시설 검사결과 안내판을 활용하여 모래검사결과 게시



현재 : 모래검사결과를 대부분 놀이시설내 코팅지로 부착



개선안 : 기존 시설검사결과 안내판을 활용·개선하여 모래검사결과 게시

## 4 2020년 관리계획

### 모래놀이공간 위생관리

#### ○ 2020년 모래검사 소독관리 강화

##### ▶ 소독관리 강화 사유

-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 시민안전을 위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위생 강화
- 이용시민들의 모래놀이의 부정적 시각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 해소

#### 연 영

- ◆ 기생충란 검사 : 연 2회
- ◆ 중금속 검사 : 연 1회
- ◆ 일광 소독(모래 뒤집기) : 주 1회 이상
- ◆ 전문장비 소독 : 연 2회 이상

#### 개 선

- ◆ 현행과 동일
- ◆ 현행과 동일
- ◆ 일광 소독(모래 뒤집기) : 주 2회 이상
- ◆ 전문장비 소독 : 연 4회 이상

- 일광소독은 날씨가 맑은 날에 한하여 주 2회 이상 실시
- 전문장비(오존수 및 고온스팀 등) 모래 소독 연 4회(분기별) 이상 실시

#### ○ 모래소독 전문장비 구입 및 직접 운영

- 모래소독 전문장비 보유 현황
  - 8개 자치구 : 성동, 동대문, 노원, 은평, 마포, 양천, 관악, 서초
- 전문장비 구입이 어려울시 인근 장비보유 자치구와 상호 협조하여 교차 사용

#### ○ 주요내용(관리기준 : 서울시 공원내 모래놀이공간 관리기준)

구 분	내 용	관리기준(이상)
일상관리	- 쓰레기 청소(담배꽂초, 이물질) - 동물 배설물 제거(모래 뒤집어 확인)	매일 매일
소독관리	- 일광소독 - 전문장비 소독(오존수 및 고온스팀)	주2회 연4회(분기별)
모래검사	- 기생충란 검사 - 중금속 검사	연2회 연1회
모래관리 안내표시 등	- 모래놀이공간에 모래관리 내용 표시 - 보도자료, 구소식지 등에 모래관리 홍보	모든 모래공간 연1회

#### ※ 모래검사 방법

- 기생충란 검사 :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(연 2회)
- 중금속 검사 :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에서 기관별 지정량 검사 의뢰, 나머지 잔여량은 외부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(연 1회)
- 모래시료량 : 기생충란 250g, 중금속 1.5kg

### 환경보건 위해성 관리

- 기 준 : 환경보건법 제23조(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)
- 주요내용 :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,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

구 분	내 용											
확인검사	- 신규 설치 및 보수 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- 확인검사 부적합시 시설이용 금지 ※ 일부 보수라도 검사											
부식·노후화	-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, 도료 등이 벗겨졌는지 확인											
도료·마감재	- 납, 카드뮴, 수은,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.1% 이하 - 납은 질량분율로 0.06% 이하											
방부목재	- 사용금지된 목재방부제 사용 여부 - 사용금지 방부제 : A-1, A-2, CCA-1, CCA-2, CCA-3, CCFZ, CCB											
모래	- 기생충(란) 불검출 - 중금속 기준치 이하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함량기준</th> <th>납(Pb)</th> <th>카드뮴(Cd)</th> <th>6가크롬</th> <th>수은(Hg)</th> <th>비소(As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mg/kg</td> <td>200이하</td> <td>4이하</td> <td>5이하</td> <td>4이하</td> <td>25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함량기준	납(Pb)	카드뮴(Cd)	6가크롬	수은(Hg)	비소(As)	mg/kg	200이하	4이하	5이하	4이하
함량기준	납(Pb)	카드뮴(Cd)	6가크롬	수은(Hg)	비소(As)							
mg/kg	200이하	4이하	5이하	4이하	25이하							
합성고무 바닥재	- 납, 카드뮴, 수은,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.1% 이하 -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mg/kg 이하											

###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

- 기 준 :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(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)
- 주요내용 : 설치검사, 정기시설검사, 안전점검 등

구 분	내 용
설치검사	- 신규 및 보수 시 시설물 인수전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- 반드시 합격증 확인 후 놀이터 개방 ※ 일부 보수라도 검사
정기 시설검사	-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검사 실시 -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검사 의뢰
안전점검	- 월 1회 이상 자체 육안 또는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조사 - 점검결과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 금지와 1개월 내 안전진단 의뢰
기 타	- 합격의 표시, 검사불합격시 시설 이용금지 -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(2년에 1회 이상), 보험가입 등

## 5 행정 사항

### ○ 자치구 및 사업소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관리 실적 보고

- 상반기 : 2020.6.30.까지 / 하반기 : 2020.12.20.까지

- 붙임 : 1. 2019년도 어린이놀이터 통계현황 1부.  
2. 2020 기관별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관리 실적 보고(양식) 1부.  
3. 기생충란 보건환경연구원(동물위생시험소) 검사일정 및 의뢰방법 1부.  
4. 중금속 보건환경연구원(물환경연구부) 검사일정 및 의뢰방법 1부. 끝.